



# 제주 4·3 재심 재판 시민방청단

가이드북



# 목차

제주4·3 재심 시민방청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
제주4·3이 뭔가요?	4
제주4·3 군사재판의 모든 것	6
제주4·3 재심재판의 모든 것	8
‘법알못’도 쉽게 이해하는 법률용어 풀이	10
시민방청단, 어떻게 운영되나요?	12
제주4·3 타임라인	13
참고하면 좋을 자료들	15
(사)제주다크투어는?	16

# 제주4·3 재심 시민방청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분들의 재심 개시 결정을 위한 재심청구 재판(심리)이 2020년 6월 8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재심청구인은 4·3 당시인 지난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등 두 차례 진행된 불법 군법회의(군사재판<sup>1</sup>)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349명의 유가족입니다.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압송돼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됐거나 구사일생으로 생환했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은 2018년 9월 개시되어, 이듬해 1월 공소기각 판결이 났지만,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고령인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재심을 개시해 70여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 시민방청단이 함께하려 합니다. 349명의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들은 행방불명으로 재판정에 직접 설 수 없지만, 우리 시민방청단이 증인이 되어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고 기억하겠습니다.

---

<sup>1</sup>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1차 군법회의에서 형을 받은 사람은 871명, 제2차 군법회의에서 형을 받을 사람은 1,659명으로 총 2,530명입니다. 이 중 우선적으로 가족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349명의 혈족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제주4·3이 뭔가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sup>2</sup>입니다.

### 해방의 기쁨도 잠시

원래 하나의 나라였던 한반도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됐으나, 냉전의 여파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미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속,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열린 3.1절 28주년 기념대회 중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월 10일, 제주도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 내 직장 95%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규모의 파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적절한 사과와 대응 대신 탄압을 이어갔습니다.

3.1절 기념대회 발포사건 이후 이어진 가혹한 탄압으로 제주에서는 당시 미군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습니다. 당시 정치인 이승만과 미군정은 남쪽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싶어 했던 반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통일된 민족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1948년 5월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했습니다.

### 당시 제주 도민들은...

단독 선거를 한 달여 앞둔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전역에서 미군정의 탄압과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봉기를 일으켰던 인민유격대가 외친 구호는 ‘경찰 탄압에 반대한다, 단독선거 반대한다’ 였습니다. 불행하게도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1월 중순경부터 약 4개월 동안 ‘초토화 작전’이라는 미명 하에 제주도민들을 더더욱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제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군·경과 극우 청년단체 등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해안가 일부 마을을 제외한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면서 4·3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sup>2</sup>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536쪽

## 금기의 역사, 제주4·3

그러나 4·3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 되었습니다. 권위주의 군부독재 시기를 비롯해 약 50년간 4·3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4·3과 관련한 연좌제로 제주의 많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해야했습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조작간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인사들은 4·3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1999년에는 4·3 당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을 증명하는 수형인명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4·3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2003년 10월에는 국가차원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4·3 당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사과했습니다. 4·3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지요.

##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들의 권리 찾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했지만 여전히 4·3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죄인의 명예가 씩워진 4·3수형인들이지요. 제주4·3 70주년을 맞은 2018년, 생존 수형인들 18명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었고 드디어 지난 2019년 1월,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일부나마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불법 군사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 중 18명에 불과합니다. 아직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2019년 6월,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청구되었고 이어서 2020년 2월, 추가로 339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족들이 청구한 내용이 재심개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방청단이 모니터링 할 재판은 바로 이 349명에 대한 재판입니다.

## 제주4·3 군사재판의 모든 것

### Q. 4·3 당시의 군사재판, 어떻게 이뤄졌나요?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7일, 해안에서 5km 이상 통금을 명령하는 포고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에 계엄법이 만들어진 것이 1949년 11월 24일이니 이 때는 법에 기반하지도 않은,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이었지요. 제주에 선포된 계엄령은 같은 해 12월 31일에 해제됩니다. 제주에서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법회의(군사재판)가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두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졌는데, 이를 각각 ‘제1, 2차 불법 군사재판’이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1차 군사재판**이 이뤄진 1948년 12월은 계엄령 시기였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적용된 법률은 **구 형법 77조 내란죄**<sup>3</sup>입니다. 1차 군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71명으로 파악됩니다.

**2차 군사재판**은 계엄령이 끝난 이후인 1949년 6월~7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계엄령 시기가 아니어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이 이뤄질 수 없었지만, 정부는 재판을 빨리 끝내고 또한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해 당시 군법에 해당하는 국방경비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해 단심제로 군법회의(군사재판)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적용된 조항이 **국방경비법 32조 간첩죄와 33조 이적죄**입니다.

국방경비법의 대부분은 군인과 군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32조와 33조만 “여하한 자든지”라는 문구가 있어 민간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sup>4</sup> 2차 군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659명입니다.

### Q. 4·3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4·3 당시 옥고를 치렀던 생존자들의 증언이나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유족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당시 제주도민들은 군경에 의해 영문도 모른

<sup>3</sup> 구 형법(일제 형법) 제77조 정부(政府)를 전복(顛覆)하거나 또는 국토(國土)를 침탈(僭竊)하거나 기타(其他) 조헌(朝憲)을 문란(紊亂)할 것을 목적(目的)으로 하여 폭동(暴動)을 한 자(者)는 내란(內亂)의 죄(罪)로 하여 좌(左)의 구별(區別)에 따라서 처단(處斷)한다. 1.수괴(首魁)는 사형(死刑) 또는 무기금고(無期禁錮)에 처(處)한다. 2.모의(謨議)에 참여(參與)하거나 또는 군중(群衆)의 지휘(指揮)를 한 자(者)는 무기(無期) 또는 3년 이상(三年以上)의 금고(禁錮)에 처(處)하고 기타(其他) 제반(諸般)의 직무(職務)에 종사(從事)한 자(者)는 1년 이상(一年以上) 10년 이하(十年以上)의 금고(禁錮)에 처(處)한다. 3.부화(附和)수행(隨行)하거나 기타(其他) 다만 폭동(暴動)에 관여한 자(者)는 3년 이하(三年以下)의 금고(禁錮)에 처(處)한다. 전항(前項)의 미수죄(未遂罪)는 이를 벌(罰)한다. 단(但) 전항(前項) 제3호(第三號)에 기재(記載)한 자(者)는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한다.

<sup>4</sup> 국방경비법 제32조 (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33조 (간첩) 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소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차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

채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도 자행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헌법 상의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은 꿈도 꿀 수 없었지요. 많은 생존 수형인들이 무엇 때문에 잡혀왔는 지도 모른 채 형무소에 가서야 죄명과 형량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검찰의 공소장 등 기본적인 재판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시 행해졌던 군사재판이 차마 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Q.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부는 제주도에서 사형에 처해졌고 대다수는 목포, 마포, 서대문, 대구, 대전, 인천, 전주 형무소 등지에 분산 수감되었습니다. 19세 이하 소년들은 인천소년형무소, 여성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지요. 제주도에서 총살이 집행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희생 장소와 날짜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사람들 중 대부분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각 형무소 별로 불순분자 처리 방침에 따라 학살되었고 일부는 옥문이 열리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행방불명됨으로써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제주4·3 재심 재판의 모든 것

### Q. 이번 재심 재판,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이번 재심은 제주4·3 당시인 지난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등 두 차례 진행된 불법 군사재판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압송돼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 됐거나 구사일생으로 제주도에 돌아왔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가신 349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재판은 대상 인원이 많은 만큼 10~20명씩 조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Q.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행방불명 된 피해자들의 사망 사실을 어떻게 법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입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이번 재판은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이므로 재심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형인들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사망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 군·경이 수형인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불법성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수형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 군경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거나 사형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재심이유는 관련 법률 조항의 내용 중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는데도 유죄의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앞서 지난 2019년 1월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난 생존 수형인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판부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당시 사법 절차가 불법적이었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과 달리 이번 재판에서는 수형인들이 행방불명됐거나 사망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가족의 진술 등 다른 방법을 통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Q. 누구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에서 정한 이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sup>5</sup> 나아가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 드렸듯이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경우 수형인들이 행방불명된 상태이므로 이들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수형인들 중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 Q. 재판은 언제까지 이어지고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이번 재판은 재심을 신청한 청구인들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비로소 사건 자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은 정식 재심 재판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심 개시에 대한 결정은 항고와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2019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생존수형인 재심의 경우 재심 청구 후에 1년 5월 가량의 심리를 거쳐 재심 결정이 이뤄졌고 이러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바로 재심이 속개되었습니다.

재판 일정은 재판 당사자들과 법원측의 일정 조율에 따라 열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판사가 정하지만 변호인이나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재판장)이 이를 타당하다 생각하면 기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향후 재판 일정을 예상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은 사전에 시민방청단원들이 있는 단톡방 등을 통해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sup>5</sup> 형사소송법 제 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 '법알못'<sup>6</sup>도 쉽게 이해하는 법률용어 풀이

아래 단어만 알면 쉽게 방청할 수 있어요!



## 형사재판

법률을 통해 범죄로 정하여진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과 이를 변호하는 변호인, 또 국가를 대신해 죄를 입증하는 검사,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가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축구로 치자면 판사가 심판,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비수, 검사가 공격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소(訴)를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흔히 뉴스에서 '검찰이 A씨를 B혐의로 기소했다'는 형식으로 보도되곤 합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사법부에 주장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소를 제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의 입증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 제기는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수사 결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sup>6</sup> 법잘알 :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cf. 법알못 :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후에는 변호인과 검사의 법정 공방이 이뤄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 재심

재심은 과거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 중 사실인정에 대해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음이 입증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구제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총 3심을 거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쌍방이 항소(2심) 또는 상고(3심)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은 재론(再論)이 불가능할까요?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정 판결 이후 앞선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등의 출현 등으로 명백하게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재판을 청구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를 ‘재심’이라고 합니다.

## 공소기각

공소기각은 소송조건이 결여되는 등의 절차상의 이유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을 말합니다. 공소기각의 경우에는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유·무죄 등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공소기각은 크게 ‘결정’과 ‘판결’ 두 가지 형식으로 선고됩니다. ‘결정’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거나, 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관할이 경합되어 재판할 수 없는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 증거 발견 없이 기소된 경우,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주4·3 재심 재판 시민방청단, 어떻게 운영되나요?

- 재판을 방청하기 전, <제주4·3 재심 재판 시민방청단 가이드북>을 꼼꼼히 읽어 주세요.
- 재판 날짜가 잡히면 단체 채팅방에 날짜와 시간, 장소를 공지합니다.
- 당일 참석 가능한 방청단원들은 30분 전 법원 앞에서 만나 함께 입장합니다.
- 재판 방청 시에는 흥기로 오인될 수 있는 물건이나 물병 등은 입구에 맡기고 들어가야 합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하거나 꺼야 하고 카메라, 노트북 등도 소지 불가합니다.
- 재판 방청이 끝나면 함께 모여 그날 방청한 재판에 대한 소감을 나눕니다. 필요한 경우 후기를 작성합니다.

### 제주4·3 재심 재판 시민방청단 문화 약속문

- 우리는 함께 제주4·3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모임의 주체임을 압니다.
- 우리는 시민방청단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즐거움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평등한 모임을 지향합니다.
- 우리는 성별, 성적지향, 학력, 학벌, 나이, 장애, 외모, 지역, 병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 시민방청단 모임에서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민주적 토론을 지향하며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합니다.
-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연애, 가족, 결혼 등이 필수가 아님을 유의합니다.
-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는 바로 사과합니다.
- 우리는 시민방청단 모임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 금지하기보다는 함께 실천하고 변화하는 방향으로 약속을 만들어 나가며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시민방청단을 만들어 나갑니다.

## 제주4·3 타임라인

**1947. 03.**

발포사건 / 3.10 민관 총파업

**1948. 04.**

고문치사 사건 3건 발생

**1948. 04.**

4·3 무장봉기 발발 / 4.28 평화협상

**1948. 05.**

5.1 오라리 방화사건

5.10 남한 단독 선거. 제주도 2개 선거구 선거 불발

**1948. 08.**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1948. 10.**

10.17 제주도 포고령 선포 / 10.19 여수 14연대 항쟁 발발

**1948. 11.**

제주도에 불법 계엄령 선포

**1948. 12.**

제1차 불법 군법회의(총 12차례)

12.31 제주도 불법 계엄령 해제

**1949. 06.~07.**

제2차 불법 군법회의(총 10차례)

**1949. 10.**

제주비행장 인근에서 1949년 군법회의 결과 사형선고된

249명에 대한 총살 집행 후 암매장

**1950. 06.**

한국전쟁 발발

**1954. 09.**

한라산 금족령 해제

**1999. 09.**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공개

**2000. 0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공포

**2003. 10.**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 / 10.31 노무현 대통령 사과

**2017. 04.**

4·3생존수형인 18명 재심 재판 청구

**2018. 09.**

4·3생존수형인 재심 재판 개시 결정

**2019. 01.**

4·3생존수형인 무죄 취지 ‘공소기각’ 판결

**2019. 06.**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재판 청구

**2020. 02.**

행방불명 수형인 339명에 대한 추가 재심 재판 청구

**2020. 06.**

4·3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청구 재판 개시

## 참고하면 좋을 자료들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1~5』, 1994~199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현기영, 『순이삼촌』, 1978

## (사)제주다크투어는?

(사)제주다크투어는 여행 속에서 제주4·3을 비롯한 제주의 역사를 알리고 기억을 공유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사람들과 함께 제주 곳곳의 4·3 유적지를 방문하고 기록하며 알려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국경을 넘어 아시아 과거사 피해자들과도 연대합니다.



### 기억

제주4·3과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려나갑니다



### 기록

제주도 곳곳의 4·3 유적지들을 방문하고 기록합니다



### 생태/평화

제주의 평화와 자연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 연대

국경을 넘어 아시아 과거사 피해자들과도 연대합니다



# 제주 4·3 재심 재판 시민방청단



제주4·3 재심 재판 시민방청단 가이드북 | 2020. 09. 04. 발행

(사)제주다크투어 (담당 : 신동원 시민참여팀장 [jejudarktours@gmail.com](mailto:jejudarktours@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3, 2층 | 064-805-0043 | [www.jejudarktours.org](http://www.jejudarktours.org)

시민의 힘으로 제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주다크투어를 응원해 주세요.

회원가입 [bit.ly/JejuDarkTours](http://bit.ly/JejuDarkTours)